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기간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이체 등의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4조의2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세하는 조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한 조항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항을 적용한 것이며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기인함.
 -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전자송달방식이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250원,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자동이체 방식, 전자송달 방식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임시(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과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조례안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71 호
----------	---------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안 제4조의2)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대상제외

라. 입법예고(2022. 2. 10. ~ 3. 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25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2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② (생략)</p>	<p><u>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p> <p>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p> <p>1. ----- ----- ----- <u>250원</u></p> <p>2. ----- ----- <u>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